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별도계약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임
-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또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평형의 부가세는 대지비와 건축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짐.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층의 설치가 의무화된 법정 최소면적을 초과하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주택형별 표기면적은 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하여 소수점 이상만(소수점 이하 절사) 표시하였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중종의 평형대신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시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에 의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할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애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락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용인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상기 아파트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
- 당 사업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6항에 의거 '3차녀 특별공급' 으로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 함

☒ **발코니 기본 확장형별 공사비**

[단위 : 원,부가세포함]

주택형(㎡)	기본확장 A형 [거실+주방+현관]	기본확장 B형 [거실+주방+현관+안방]	기본확장 C형 [전체]	비 고
112.1645	7,540,000	11,220,000	13,700,000	거실/복도(375만), 주방/식당(379만), 안방(368만), 침실1(129만), 침실2(119만)
111.7142	7,120,000	9,740,000	12,110,000	거실(376만), 주방/식당(336만), 안방(262만), 침실1(132만), 침실2(105만)
161.8273	11,060,000	13,570,000	17,760,000	거실/복도(458만), 주방/식당(531만), 현관(117만), 안방(251만), 침실1(138만), 침실2(128만), 침실3(153만)
193.9945	12,610,000	15,300,000	19,990,000	거실/복도(506만), 주방/식당(633만), 현관(122만), 안방(269만), 침실1(164만), 침실2(141만), 침실3(164만)

\* 상기 기본확장 A,B,C형은 별도 신청 가능함.

☒ **별도 선택가능 옵션형별 공사비**

[단위 : 원,부가세포함]

주택형(㎡)	옵션 A형 [거실+주방+현관]	옵션 B형 [거실+주방+현관+안방]	옵션 C형 [전체]	비 고
112.1645	13,210,000	25,620,000	29,230,000	주방폴리싱바닥(372만), 주방가구(325만), 4구쿡탑가스오븐일체형(65만), 식기세척기(50만), 아일랜드후드(60만), 거실아트월(169만), 복도아트월(175만), 거실간접조명(105만), 안방아트월(163만), 안방불박이장가구(454만), 부부욕실비데(30만), 부부욕실(594만), 침실1가구(361만)
111.7142	15,430,000	27,460,000	27,460,000	주방폴리싱바닥(493만), 주방가구(476만), 4구쿡탑가스오븐일체형(65만), 식기세척기(50만), 아일랜드후드(60만), 거실아트월(246만), 거실간접조명(153만), 안방아트월(238만), 안방불박이장가구(935만), 부부욕실비데(30만)
161.8273	29,830,000	37,650,000	42,440,000	주방폴리싱바닥(479만), 식탁아트월(479만), 주방간접조명(141만), 주방가구(650만), 보조주방가구(262만), 4구쿡탑가스오븐일체형(65만), 식기세척기(50만), 아일랜드후드(60만), 거실아트월(296만), 복도아트월(239만), 현관중문(57만), 거실간접조명(205만), 안방아트월(308만), 안방워크인장가구(444만), 부부욕실비데(30만), 침실1가구(479만)
193.9945	37,020,000	46,330,000	51,850,000	주방폴리싱바닥(665만), 식탁아트월(586만), 주방간접조명(202만), 주방가구(844만), 보조주방가구(361만), 4구쿡탑가스오븐일체형(65만), 식기세척기(50만), 아일랜드후드(60만), 거실아트월(316만), 복도아트월(248만), 현관중문(68만), 거실간접조명(237만), 안방아트월(383만), 안방워크인장가구(518만), 부부욕실비데(30만), 침실1가구(552만)

\* 상기 옵션 A형은 기본확장 A형 선택시 신청가능, 상기 옵션 B형은 기본확장 B형 선택시 신청가능, 상기 옵션 C형은 기본확장 C형 선택시 신청가능

[단위 : 원,부가세포함]

구 분		옵션 A형 [거실+주방+현관]	옵션 B형 [거실+주방+현관+안방]	옵션 C형 [전체]	금액	비고
옵션 공사비 포함 품목	쿡탑 가스오븐 일체형	○	○	○	650,000	옵션형별 공사금액내에 포함된 금액임.
	식기세척기	○	○	○	500,000	
	아일랜드 후드	○	○	○	600,000	

\* 상기 옵션 공사비 포함품목은 옵션 A,B,C형별 공사 신청시 건축공정상 별도 설치가 불가능한 관계로 일괄 시공됨.

☒ **선택형 옵션품목**

[단위 : 원,부가세포함]

구 분	기본확장 A형/ 옵션 A형 [거실+주방+현관]	기본확장 B형/ 옵션 B형 [거실+주방+현관+안방]	기본확장 C형/ 옵션 C형 [전체]	금액	비고
주방TV 7"	선택사항	선택사항	선택사항	430,000	
바지다리미		선택사항	선택사항	260,000	161형 이상
월플록조		선택사항	선택사항	1,250,000	161형 이상

\* 상기 선택형 옵션품목은 별도 신청 가능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3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6항(2006. 8. 18신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3자녀 특별공급을 하고자 함

- 특별공급 대상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 4. 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만 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이어야 함(단, 영유아는 만 6세 미만)
  - 자녀수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태아는 포함이 안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거주지역별 3자녀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 공급량의 3% 이내로 총 18 세대

주택형	112.1645(㎡)	111.7142(㎡)	161.8273(㎡)	193.9945(㎡)	합 계
세대수	4 세대	2 세대	7 세대	5 세대	18 세대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3자녀 이상)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공급대상’의 공급호수 참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통계정보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아래 표 참조)				
	구 분	112.1645(㎡)	111.7142(㎡)	161.8273(㎡)	193.9945(㎡)
	경기도 거주자	2	1	3	3
	서울시 거주자	2	1	3	2
	인천시 거주자	-	-	1	-
	계	4	2	7	5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중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모드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은 청약통장으로 일반공급 주택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당첨 된 경우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고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은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결과 상기 공급세대에 미달하거나 계약자가 없을 경우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구비서류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 분)
  -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4. 14(월) 10:00~14:00 / 당사 견본 주택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4. 14(월) 15:00 / 당사 견본 주택(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처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특별공급에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 점 기 준	점수	비 고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2세대	5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무주택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 (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3) 일반공급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4.7)** 현재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용인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의 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능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이며, 수도권 거주자(용인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신청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 가능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4) 일반공급 일정 및 신청자격

구분	거주구분	순 위	주택형	신 청 자 격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 영 주 택	용인시 / 서울 특별시 및 수도권	1순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li> <li>●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li> <li>※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li> </ul> </li> <li>●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ul>	2008. 4. 15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li> <li>· 국민은행</li> <li>www.kbstar.com</li> <li>·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li> <li>www.ap2you.com</li> </ul> </li> <li>- KB모바일</li> <li>Mbank, kbank, Bank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일시 : 2008년 4월 23일 13시</li> <li>● 장소 : 당사 견본주택</li> <li>● 2008년 4월 23일 아시아경제신문 게재</li> <li>●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명통지는 하지 않음</li> </ul>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부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li> <li>● <b>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b></li> <li>● 1980. 8. 29이전 국민은행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 5. 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li> </ul>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li> <li>●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85㎡초과 주택에 한함)</li> <li>●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li> </ul>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세대에 속한 분</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li> <li>- 2002. 9. 5 이후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 9.5 가입자 포함)</li> </ul> </li> </ul>			
	2순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li> <li>●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ul>	2008. 4. 16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시간 08:30~18: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명통지는 하지 않음</li> </ul>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b></li> <li>●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액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li> </ul>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li> <li>● 1순위자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분 (단, 1주택 소유로 인한 추첨제 대상자는 2순위 청약 불가)</li> </ul>				
	3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li> </ul>	2008. 4. 17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장소 : 국민은행 인터넷.모바일</li> <li>● 접수시간 : 08:30~ 18: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ul>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청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장애우 청구청약 가능 시간 : 09:30 ~ 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가정점수 산정기준표

가정항목	가정상한	가정구분	점수	가정구분	점수	확인한 서류 등	비고
① 무주택 기간	32	만30세미만 미혼인무주택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세대 분리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정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 시 부양가족 수 산정)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계	84		-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2007.9.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 85㎡이하 가정제 75%, 추첨방식 25%, 전용85㎡초과시 가정제50%, 추첨방식50%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정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정점수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 총점84점
- 가정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 (당첨자 결정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www.ap2you.com](http://www.ap2you.com)), 국민은행 ([www.kbstar.com](http://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정항목별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

을 산정함. \*30세 미만 미혼자의 배정은 0점임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을 말함]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85㎡ 초과 10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 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노약자·장애우 등 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특별공급 (3자녀 이상)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li> <li>●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각1통</li> <li>● 특별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및 배점기준표(당사 견본주택 비치)</li> <li>● 가족관계증명서 1통(해당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함)</li> <li>●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 (해당자에 한함)</li> <li>● 인감도장, 주민등록증</li> </ul>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주택공급신청서 (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비치)</li> <li>●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1, 2순위자에 한함)</li> <li>● 예금인장 (1, 2순위자 모두 포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li> <li>●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li> <li>※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 등, 초본 등 (배우자 관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li> <li>●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li> </ul>
	제3자 대리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증중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li> <li>●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li> <li>※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li> </ul>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이상 소유자는 제외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써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 (\*장기간 보유 특례)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신청접수방법**

- 특별공급(3자녀 이상):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서울, 인천, 경기(용인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에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2순위 : 1순위자중 가정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정제로 청약접수되며 가정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1순위자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li> <li>● 계약금(가능한 한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li> <li>●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li> <li>●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세대주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li> <li>- 가족관계증명서 1통</li> <li>-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li> <li>-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li> <li>-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li> <li>-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li> <li>-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li> </ul> </li> </ul>
주택소유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족대장 등본 포함)</li> <li>-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li> <li>-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li> </ul>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서류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li> <li>- 계약자 인감도장</li> <li>-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li> <li>-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li> </ul> </li> </ul>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외국인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전용 85㎡이하	전용 85㎡초과	신청금 납부방법(영업점 창구 청약자에 한함)
청약신청금	200만원	300만원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 불 기 간 : **당첨자 발표후 익영업일 이후 2008. 4. 24일부터 (평 일 : 09:30 ~ 16:30, 토, 일요일, 공휴일 : 제외)**
- 환 불 장 소 :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청약신청시 청약자 본인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로 환불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입금처리됨)
- 환불시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당시 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서류 : 상기 서류외에 제3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주택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1통, 인감도장, 위임장
- 제3순위 당첨자의 청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 입주자 선정 방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여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li> <li>●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li> </ul>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li> <li>●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수도권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고,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분(용인시 주택건설지역 1년 미만 거주신청자 포함)은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li>●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자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b>공개한 후</b>,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li> <li>●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li> </ul>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정당당첨자 2008년 4월 28일 ~ 4월 30일(3일간) / 평일 09:30~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요함
- 지정된 2차 계약금·중도금·잔금은 공급계약서상에 기재된 분양금 납부일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 계약조건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2,3순위 당첨자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1순위 당첨자에 해당)될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 09. 05일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에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5항에 의거)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중 다음에 해당될 경우 특별공급 자격박탈 및 일반청약 자격이 제한됨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계약체결 후라도 주택소유 및 무주택 기간이 사실과 다르거나 분양가 상한주택에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되어 14일간의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당첨취소와 함께 공급계약이 취소됨)
  - 기타 허위사실이 발각되거나 서류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에 준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예비 당첨자중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입주예정일** : 2010년 6월[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앞당겨 질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예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자 사전점검 예정일** : 2010년 5월(정확한 입주자 사전점검일은 추후통보)

- 당사는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여러분이 직접 하자 여부(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를 사전점검하시는 행사를 실시함
- 점검기간 : 3일이상 ● 사전점검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은 사전점검일 약14일전에 통보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1개소), 관리사무소(1개소), 경로당 및 보육시설(1개소), 주민공동시설(2개소)

☒ **시공사별 시공범위**

- 본 사업지는 2개 시공사가 공동 시공하는 아파트 사업지로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11동(총 8개동)과 해당동 주차장 공사일체는 (주)동일하이빌이 시공하며 301, 309, 310, 312, 313동(총 5개동)과 해당동 주차장 일체는 (주)상호가 시공함. 향후 아파트 보존 등기시 동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내 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스포츠클럽센터, 미디어센터 등),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 기타시설(수변전 설비, 기계장치, 옥상조형물 등)은 (주)동일하이빌과 (주)상호가 협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공함
- 입주 후 아파트 세대의 하자보수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해당동의 시공사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요청하여야 하며 아파트내 공동시설 또는 기타시설(수변전설비, 기계장치, 옥상조형물 등) 또한 해당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함

☒ **아파트 브랜드(BRAND) 적용**

- 아파트 전체의 문주 및 축벽에 적용되는 브랜드명은 동일하이빌로 통일하며 입주 전·후 (주)상호에서 시공한 해당동의 계약자 및 입주자들은 브랜드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의사항(공통)**

- 주택공급신청서의[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창구 청약자에게서는 주택공급신청서상에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 명의 도용등 부정할 방법으로 당첨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은 취소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인서명」은 신청인의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임대주택(임대기간 완료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자 제외)가 당첨되는 경우 당첨된 분양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을 경우에는 새로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 됨. 단, 임대 계약 만료가 분양주택의 입주시점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면적의 경우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고 공급당시 가격으로 추후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차이가 나는 부분의 면적 중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또한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가 2% 이내인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품질개선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체품질, 품귀, 제조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와 수입품인 경우에는 양질의 대체 제품 또는 동질이상의 품질 및 기능의 제품으로 시공사가 유연성 있게 선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건교부 주관30415-26905('90.10.15)]에 의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재 등은 촬영 보존함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축물은 개정된 주택법에 의거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3개 공정(조경공사, 도배공사, 도장공사 등)이 감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단지내에 건립되는 스포츠클럽은 입주인 소유로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해당 블록의 입주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당사에서 제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장을 하여야 하며, 별도로 진행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개별로 인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함
- 이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변조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
- 주택법시행규칙제11조4항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배치상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노인정 등의 설치로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건폐율, 용적율,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내용 및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세대내 일부 가구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별옵션사항은 별도로 모델하우스 및 분양 자료의 옵션항목을 확인하여야 함
- 욕실에 설치되는 세면대, 좌변기, 욕조, 수전 등의 제품은 모델하우스에 설치 또는 분양 자료에 표현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동호수 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울벽(웬스 포함)은 307동 전면에 1.5m, 308동 동남측에 1.5m, 310동 서남측에 2m, 311동 전면에 1.5m, 312동 전면에 1.5m, 313동 전면에 5m 높이로 설치될 예정이며, 주택공급계약전 울벽높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결과에 따라 단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정(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레벌차에 따른 울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입주시 이삿짐용 사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며, 엘리베이터만 사용가능함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탐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종전에는 가구제품, 가전제품 및 위생용품이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되었으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령(2004.1.14 시행)에 의하여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의 옵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본 아파트의 분양가격에는 별도 옵션 계약금액이 제외되어 있음. 계약 전 기본품목 및 옵션품목 등을 완벽히 확인 및 숙지한 후 계약에 입회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임. 모집공고상에 표기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옵션이 제외된 기본확장 공사비 임
- (주)동일조건, (주)에프제이유디코리아, 우정엘디(주)는 용인신봉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시행중인 ‘용인신봉구역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를 환지받아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용인신봉지구 도시개발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당 사업부지 이외의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시설은 도시개발사업 여건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중로 1-30호선(터널도로)과 성북1C연결도로는 용인신봉지구 도시개발조합과 용인시가 주관 시행하며, 조합 및 용인시의 추진상황에 따라 아파트 준공 후 개통될 수 있음
- 송전탑 지중화 작업은 용인신봉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하므로 지연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 동 지구에 계획중인 학교(초,중,고)는 향후 학교신설 교부금 확보 시기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경기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여부 및 시기에 따라 변경(설립시기 지연 또는 연기) 될 수 있으며, 설립지연(연기)

시 입주학생은 인근 기존학교에 수용됨

- 블록단지마을 명칭은 분양 후 용인문화원에 의뢰하여 결정한 후 별도 통보 예정임.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해 일부세대의 전면, 후면, 측면에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이 설치될 수 있음
- 모집공고상의 공급위치는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 및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위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동 및 세대의 경우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면 이에 따른 해당 시설 출입구가 인접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도 후 지내력시험 결과 및 성능 향상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의 기타공용(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각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전체 세대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으며, 입주 후 공용부분 관리비는 세대면적에 따라 균등부과 될 수 있음
- 일부 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및 지하주차장의 채광,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Dry Area 또는 Sunken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 소음권 및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일부 동 주동 주변레벨은 인근 도로 또는 대지레벨에 비해 낮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축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설계변경은 관계법령에 따른 대관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의 규모 및 외관 디자인(입면, 색채, 재질, 간판위치, 조경, 주차위치, 대수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도시개발구역내 학교의 개교일정은 관할 교육청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일부 학교의 개교 시기는 입주시기보다 지연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됨**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 **용인 신봉지구 공동주택 3블럭 동일하이빌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임**

#### ●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보증서번호 제06712008-101-0000200호, 금액₩397,156,800,000)을 득함**

● 보증채우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양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기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공사 이행을 말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 : 발코니샤시, 기타 마감자재 공사 등)과 관련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보증금액은 공급금액 확정(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터넷,ARS,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 <a href="http://www.kbstar.com">www.kbstar.com</a>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a href="http://www.ap2you.com">www.ap2you.com</a> )에 접속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08. 4. 23 ~ 2008. 5. 2 (10일)	▶2008. 4. 23 ~ 2008. 5. 2 (10일)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701]	▶1369(서비스코드 5#)
	이용기간	▶2008. 4. 23 ~ 2008. 5. 2 (10일)	▶2008. 4. 23 ~ 2008. 5. 2 (10일)
KB모바일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KTF, LGT : KT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이용기간	▶2008. 4. 23 ~ 2008. 5. 2 (10일)	-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2008. 4. 23.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용자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용자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분양대금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 972401 - 01 - 023719 ), 예금주 : (주)동일토건 외 1**
- 지정된 총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시 행 자 :** (주)동일토건, 주소:충남 천안시 오룡동 40-3번지, 등록번호:114-81-35694, 대표이사:김영진  
 (주)에프제이유디코리아,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6-37 3층, 등록번호:120-86-69253, 대표이사:박영곤  
 우정엘디(주),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654-3 프라자654빌딩 12층, 등록번호:129-81-27842, 대표이사:전스티브용

**☒ 시 공 자 :** (주)동일하이빌, (주)삼호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 사 명	감 리 금 액 (원)	비 고
토 목, 건 축	(주)유원건축사사무소	2,889,248,263	V.A.T 별도
전 기	(주)휴먼아키텍처종합건축사사무소	484,163,416	V.A.T 포함
통신 · 소 방	(주)하일기술단	90,000,000	V.A.T 별도

**☒ 건본주택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300번지와 (T.031-712-0009)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 건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람